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411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4119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단1331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현

피고, 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승복

변론 종결 2020. 1. 17.

판결 선고 2020. 2. 7.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단1331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 설령 망인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대출원리금 내역서(을 제6호증의 2, 3) 등에 의하면 피고는 1999. 3. 31.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11. 28.부터 2008. 12. 3.까지 네 차례의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하여 64,257,222원을 지급받았으므로(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인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 1) 피고는 망인에게 1995. 2. 8. 3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2)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망인을 상대로, 망인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원리금 상환 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33,000,000원, 보험기간을 1995. 2. 4.부터 2000. 4.

3.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대출금 변제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의 청구에 따라 F이 1998. 7. 21. 33,000,000원을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니, 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99가단95874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1999. 7. 15. "망인은 F에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22.부터 1998. 8. 20.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F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가)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141572호로, 망인에게 1996. 10. 14. 30,000,000원을 이자 연 14.5%, 변제일 1998. 10. 14.로 정하여(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1996. 11. 7. 20,000,000원을 이자 연 15%, 변제일 1999. 11. 7.로 정하여(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 각 대출하였는데, 망인이 제2대출금에 대하여는 원금 및 1998. 2.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제3대출금에 대하여는 원금 및 1998. 3.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체하고 있고,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1998. 1. 5. 이후 연 25%라고 주장하면서 제2, 3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1998. 10. 27. "피고(망인)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2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로부터 제1, 2, 3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제1, 2, 3대출금이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 변제되었는지 여부

가. 제1대출금에 관한 판단

F이 1998. 7. 21.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제1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제1대출금은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 변제되었다.

나. 제2, 3대출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 제2, 3대출금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으로 비로소 제2, 3대출금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2, 3대출금이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강제집행으로 64,257,222원을 지급받았다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기초로 망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2007.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타채2700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39,150,290원,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금 50,000,000원 중 일부인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일부 이자 및 집행비용)과 2008.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타채385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25,106,932원,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금 50,0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일부 이자 및 집행비용)을 각 받았다.

2) 피고는 위 2건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합계 64,257,222원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 배당절차에서 9,946,833원, 같은 법원 H 배당절차에서 8,077,953원, 같은 법원 I 배당절차에서 19,744,349원, 같은 법원 J 배당절차에서 26,488,087원을 배당받아, 합계 64,257,222원을 배당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동범

판사이선말

판사권경선